개선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2. 조치일 : 2022. 10. 28.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4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내규 「자금세탁방지 업무매뉴얼」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총 ◎개에 대하여 매년 추출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으나

일부 추출기준은 회사 실정과 맞지 않거나 추출건수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함에도 추출기준 변경을 검토하지 않는 등 추출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검토시 업무절차 및 영업환경 변화 등을 적시에 반영하고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출기준 점검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실명확인증표 진위여부 확인 불철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증표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원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내규에 실명확인증표 진위여부 확인 대상을 위험평가 결과가 고위험인

고객으로 한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고위험 고객 또는 일부 저·중위험 고객에 대해서만 실명확인증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고객의 신원확인시 실명확인증표 진위여부 확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3) 대리인에 대한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 불철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거래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법인 대표자 포함)이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내규에 따르면 신계약 체결시 요주의 인물 필터링 대상에 대리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리인이 실제소유자, 법인 대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에 대한 요주의 인물 확인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신계약 체결시 대리인에 대해 요주의 인물 여부를 확인토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4) 고객의 자금세탁위험 평가 불합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시 해당 고객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함에도

2017.◇월 고객 위험평가모형을 구축한 이후 모형의 평가요소 및 중요도가 고객의 자금세탁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위험의 경우 내규에서 정한 평가요소에 대해 2019.◈월 이후 변동사항을 점검하거나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고객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평가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 위험평가모형의 평가요소 및 중요도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여 고객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